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611호

「자동차안전도평가지험 등에 관한 규정」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5월 10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개정 이유

미래차 시대의 자율주행 성능 개발, 친환경자동차 기술진보 등 기술 발전 속도는 빠르나, 이를 평가할 자동차안전도평가 제도의 추종속도는 고시 개정 관련 필요 절차 이행에 따른 장기간 시일이 발생함에 따라, 신속·효율적인 시험항목 반영을 위해 행정사항과 기술규정이 혼재된 고시를 세부 시험방식 등 기술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고시 사항으로 간소화 하는 등 그간의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평가분야, 평가대상자동차 종류, 종합등급 산정, 재시험 절차, 제작사 요청시험 등 일반적인 행정사항만을 규정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

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10조, 제11조)

나. 제작사 요청이 있을 경우 제작사의 자체시험 결과를 인정하는 서류 검토 평가 그룹군 신설 근거 마련(안 제9조)

다. 신속·효율적인 시험항목 반영을 위한 세부 평가방식 등은 기술규정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(안 제12조)

라. 평가대행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성능시험대행자의 세부계획 수립 시 평가대상 차종, 소요예산, 일정 및 중장기계획 등을 포함토록 규정(안 제13조)

마. 기술규정 마련 및 서류검토 평가 그룹군 신설에 따라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해당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근거 마련(안 제15조)

3. 의견제출

이 「자동차안전도평가지험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2022년 5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(전화 044-201-3850, 3853)로 문의하여 주시기나,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/ 정책자료/ 법령정보/ 입법예고·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

(우편번호 30103)

- 전자우편 : herdong1928@korea.kr

- 팩스 : 044-201-5584